

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4년 12월 7일

나. 회부일자 : 2004년 12월 8일

3. 제안사유

조령산자연휴양림의 입장료 징수규정 삭제와 인터넷 예약시스템 운영에 따른 예약금 및 환불에 관한 사항, 시설사용료 현실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제명을 “충청북도자연휴양림운영조례” 로 제명을 개정
- 쓰레기 수거비용 및 숙박시설 리모델링 등에 따른 시설사용료 일부 인상 징수 (안 제4조)
- 인터넷 예약시스템 운영에 따라 예약후 3일 이내 시설사용료 전액을 지정계좌로 입금시 예약유효 (안 제6조)
- 예약취소에 따른 예약금의 위약금 처리 (안 제7조)
- 산림법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3조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 조항 신설 (안 제11조)

5. 검토 의견

- 충청북도가 설치하여 관리·운영하고 있는 조령산자연휴양림의 입장료 징수규정 삭제와 인터넷 예약시스템 운영에 따른 예약금 및 징수한 시설사용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, 시설사용료 현실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전면 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개정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

- 종전의 '충청북도조령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'중 입장료 징수 규정을 급변에 삭제하고 시설사용료 일부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제명을'충청북도자연휴양림운영조례'로 수정하는 하는 것에 대한 검토와

- 제11조 도유재산인 조령산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하여는 충청북도가 재산관리의 기본방향이 크게 변경하기 이전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